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숭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62 발의연월일: 2024. 11. 5.

발 의 자: 백승아·박홍배·이성윤

황정아 • 조인철 • 김동아

김남근 • 박해철 • 임미애

오세희 · 이광희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성적 영상물을 만든 속칭 "딥페이크(Deep Fa ke)"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음. 이러한 성범죄의 피해자는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심리적 피해를 입고, 한 번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삭제하기 어려우므로 범죄자를 더욱 엄하게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그런데 이러한 성적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 등은 해외 서버를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은밀하게 유통되는 양상을 띠고, 범죄자가 증거인멸을 위해 계정을 계속 변경하는 수법을 사용하므로 수사에 어려움이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허용하고 있는 신분비공개

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특례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사법경찰관이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를 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검사를 통하지 않고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신속히 근절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4(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 거래
 - 3.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4조의2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다만,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리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⑤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며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 위장수사의 요건, 방법, 절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u>	제14조의4(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 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u>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u> 변경 또는 행사
-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 <u>거래</u>
- 3. 제14조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4조의2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소지, 판매 또는 광고
- ③ 사법경찰관리는 신분위장수 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다만, 수 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 급을 요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 가 없이 신분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리는 제3항 단서에 따른 신분위장수사 개시 후 지체 없이 법원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신분위장수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⑤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 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 중 부

독이한 사유로 위법행위를 하 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 킨 경우 그 행위에 고의나 중 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벌하 지 아니하며 손해에 대한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의 요건, 방법, 절차,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